

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상명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5조(운영세칙)에 의거 서울캠퍼스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교내장학금

제 2 조 (장학금의 종류) 본교 학부 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명장학금
2. 성적우수장학금
3. 면학장학금
4. 디딤돌장학금
5. 근로장학금
6. 리더십장학금
7. 체육특기장학금
8. 국가보훈장학금
9. 형제·자매장학금
10. 복지장학금
11. 국가고시장학금 <2017.11.07. 폐지>
12. 공로장학금
13. 특별장학금
14. 외국인장학금
15. 나눔장학금
16. 사회봉사장학금
17. 동문자녀장학금
18. 해외봉사장학금
19. 글로벌장학금
20. 경연·공모대회장학금
21. 기금장학금
22. 산업체장학금
23.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

- 24. 다문화장학금
- 25. 다자녀장학금
- 26. 향상장학금
- 27. 융복합우수장학금
- 28. 창업장학금
- 29. 기타장학금

제 3 조 (상명장학금)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,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·시행한다.

제 4 조 (성적우수장학금) ①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

1. 학과수석·차석장학금: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/학년별 수석, 차석인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5이상이고 학과/학년별 인원이 입학정원의 3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, 계약학과는 학과/학년별 인원이 장학금 지급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.
2. 다전공우수장학금: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%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외한다.

②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해외교환,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성적우수장학금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.

제 5 조 (면학장학금) ① 면학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. 면학A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부(과)장이 추천한 자
2. 면학B: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
3. 면학C: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 자

제 6 조 (디딤돌장학금) 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소속 학과장 또는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.

제 7 조 (근로장학금) ① 교내 행정부서 및 기관, 학과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근로 장학금은 학기 및 방학에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.

③ 근로 장학금은 근로종료 후 지급하며 근로기간 중도탈락시 지급할 수 없다.

④ 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리더십장학금)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

된 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지급한다.

② 학생자치기구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체육특기장학금) 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본교 체육부 운영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.

제 10 조 (보훈장학금)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청,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, 독립유공자 (손)자녀로서 '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' 발급이 가능한 자 / 새터민 또는 새터민 자녀 중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국가유공자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교비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반액(50%는 국고로 보조함)을 감면한다.

제 11 조 (형제·자매장학금) ① 재적 중인 형제·자매학생 중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한다.

② 형제·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동시 재학 중에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 12 조 (복지장학금) ①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(임)직원(법인, 각급 부속학교 포함)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,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(명예)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중인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한다.

제 13 조 (국가고시장학금) 폐지 <2017.11.07.>

① 국가고시장학금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존 장학금(사법시험, 행정고시,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 및 입법고시에 1차 합격자에게는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)을 지급한다.

제 14 조 (공로장학금) ① 국가,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5 조 (특별장학금) ① 사고, 재난 등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외국인장학금) ① 외국인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

1.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
 2. 교환학생, 복수학위 과정 유학생
-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7 조 (나눔장학금) ① 나눔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. 나눔(기초):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인 자
 2. 나눔(장애): 본인이 장애등급 6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
 3. 나눔(생활비): 탈북대학생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사회봉사장학금) ① 직전학기(학기 및 방학)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,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 참가실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.

-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9 조 (동문자녀장학금) ① 서울 및 천안캠퍼스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1개 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 단,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자녀는 제외한다.

- 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동문자녀는 8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제 20 조 (해외봉사장학금) ①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추천으로 지급한다.

- ② 해외봉사 활동기간중 중도 탈락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
- ③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21 조 (글로벌장학금) ①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(해외어학연수, 해외연수, 해외인턴십, 해외교환학생, 해외복수학위 등)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

- ② 글로벌엘리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22 조 (경연·공모대회 장학금) ① 각종 경연·공모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해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지급한다.

- 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23 조 (기금장학금) ① 기금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상록장학금
2. 혜원장학금
3. 정채우장학금

② 기금장학금은 해당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

제 24 조 (산업체장학금) ①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제 25 조 (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) 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,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·시행한다.

제 26 조 (다문화장학금) ①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.

제 27 조 (다자녀장학금) ① 형제·자매중 본교 재학중인 셋째부터 지급한다.

제 28 조 (향상장학금) ①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.5이상 상승한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로 변경된 자와 학사경고 대상자는 제외한다.

제 29 조 (융복합우수장학금) ① 융복합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총액내 지급하며 해당 부서장 또는 단과대학장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.

제 30 조 (창업장학금) ① 창업 또는 창업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.

제 31 조 (기타장학금) ① 교내 각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승인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2 조 (지급액) ①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년도 총장이 정한다.

제 33 조 (기타) ① 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이 해외교환,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.

② 캠퍼스 및 학과간 전과의 경우 편입생 기준을 적용한다.

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만 이월이되며 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

시 장학금 지급할 수 없다. 단 군휴학의 경우 증빙 후 지급한다.

④ 기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가고시 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.

[붙임]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

장 학 금 명		2018학년도			비 고
		지급기준	지급기간	지급액(원)	
성적 우수 (신입생)	입학성적우수(수시A)	입시요강 공고	1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
	입학성적우수(수시B)	"	1학기	등록금의 50%	입학금 50%
	전체수석	"	8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
	단과대학 수석	"	4학기	"	"
	학과수석	"	1학기	"	"
	수능우수A	"	8학기	"	"
	수능우수B	"	4학기	"	"
	수능우수C	"	2학기	"	"
기 타 (신입생)	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	"	8학기	정원내 등록금의 60%	입학금 제외
			8학기	정원외 등록금의 50%	입학금 제외
	서해5도전형	"	8학기	등록금의 30%	입학금 제외
학과수석	장학금지급 규정	1학기	등록금 전액	성적기준	
학과차석	"	1학기	등록금의 70%	"	
다전공우수	"	1학기	등록금의 50%	"	
면학A	"	1학기	등록금의 40%	"	
면학B	"	1학기	등록금의 40%	저소득층(0~8분위)	
면학C	"	1학기	일정금액		
근로	"	학기, 방학	1,1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체육특기	"	8학기	등록금전액		
국가보훈 / 통일부	"	8학기	"	보훈처/ 통일부(50%), 대학(50%)	
교육보호대상자	"	8학기	"		
형제.자매	"	해당학기	700,000		
복지	"	8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	
다문화	"	8학기	700,000	입학금 제외	
다자녀	"	8학기	700,000	입학금 제외	
리더십	"	1학기	일정금액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(학생자치기구)	
디딤돌	"	1학기	일정금액	디딤돌 I : 소득분위 기준	
글로벌(해외봉사)	"	일시	일정금액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특별(홍보대사)	"	1학기	1,500,000		
나눔	(기초생활수급자)	"	해당학기	등록금의 30%	소득분위 기준
	(장애가족)	"	8학기	700,000	
	(생활비 장학금)	"	해당학기	1,0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(저소득층)
사회봉사	"	1학기	7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외국인	"	8학기	일정금액	입학조건 및 내부규정	
향상	"	해당학기	700,000	성적기준	
동문자녀	"	1학기	등록금의 50%	입학금 제외	

[붙임]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

장 학 금 명		2019학년도			비 고
		지급기준	지급기간	지급액(원)	
성적 우수 (신입생)	입학성적우수(수시A)	입시요강 공고	1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
	입학성적우수(수시B)	"	1학기	등록금의 50%	입학금 50%
	전체수석	"	8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
	단과대학 수석	"	4학기	"	"
	학과수석	"	1학기	"	"
	수능우수A	"	8학기	"	"
	수능우수B	"	4학기	"	"
	수능우수C	"	2학기	"	"
기 타 (신입생)	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	"	8학기	정원내 등록금의 60%	입학금 제외
			8학기	정원외 등록금의 50%	입학금 제외
	서해5도	"	8학기	등록금의 30%	입학금 제외
	재외국민 (전 교육과정 이수자)	"	8학기	등록금의 30%	입학금 제외
학과수석	장학금지급 규정	1학기	등록금 전액	성적기준	
학과차석	"	1학기	등록금의 70%	"	
다전공우수	"	1학기	등록금의 50%	"	
면학A	"	1학기	등록금의 40%	"	
면학B	"	1학기	등록금의 40%	저소득층(0~8분위)	
면학C	"	1학기	일정금액	-	
근로	"	학기, 방학	1,1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체육특기	"	8학기	등록금전액	-	
국가보훈 / 통일부	"	8학기	"	보훈처/ 통일부(50%), 대학(50%)	
교육보호대상자	"	8학기	"	-	
형제·자매	"	해당학기	800,000	-	
복지	"	8학기	등록금 전액	입학금 포함	
다문화	"	8학기	800,000	입학금 제외	
다자녀	"	8학기	800,000	입학금 제외	
리더십	"	1학기	일정금액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(학생자치기구)	
디딤돌	"	1학기	일정금액	소득분위 기준	
글로벌(해외봉사)	"	일시	일정금액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특별(홍보대사)	"	1학기	1,500,000	-	
나눔	(기초생활수급자)	"	해당학기	등록금의 30%	소득분위 기준
	(장애가족)	"	8학기	800,000	-
	(생활비 장학금)	"	해당학기	1,0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(저소득층)
사회봉사	"	1학기	800,000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
외국인	"	8학기	일정금액	입학조건 및 내부규정	
향상	"	해당학기	800,000	성적기준	
동문자녀	"	1학기	등록금의 50%	입학금 제외	
융복합우수	"	해당학기	일정금액	-	
창업	"	해당학기	일정금액	등록금 한도 초과지급	